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18, 11, 29,>

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

• 어두운 난(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신고번호(연도-기관	관코드-업무구분-신고일련번호) 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3일	
건축주	성명 이 수 근 개인 (이름) / 회사(호	사명)		
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 1988-05-05 / 111101-123456	전화번호 010-1234-5678		
	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 100-1	우편물 받을 수 있는	- 주소 기입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88번지	가설건축물 축조하는	는 위치 주소	
	대지소유구분 [] 본인소유 [\	/] 타인소유 면	적 350㎡	

^{※ &}quot;지번"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 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

I. 전체 개요

건축면적	58㎡ 연면적	합계		58m²
존치기간	2025 년	1 월	10 일까지	

Ⅱ. 동별 개요

존치기간 최대 <mark>3년</mark>까지 가능

동별	구조	용도	건축면적(m²)	연면적(m²)	지상층수
1	컨테이너	임시사무실	18	18	1
2	파이프천막	임시창고	40	40	1

「건축법」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2023 년 건축주 **이 수 근** 10 (여명 또로 함) 수 인

2

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